

[서식 예]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
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◆◆◆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력 있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. ○. ○. 선고 20○○ 가합○○○ 손해배상(기)사건의 확정판결

청구채권의 표시

금 00000위



- 1. 금 ○○○○○원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합○○○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
- 2. 금 ○○○○원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연 ○○%의
- 3. 금 ㅇㅇㅇ워(집행비용)

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
내역: 금 ○○○원(신청서 첩부인지대)

금 ㅇㅇㅇ워(송달료)

금 ○○○원(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)

4. 합계 금 ○○○○○원(1+2+3)

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

금 ○○○○○원(채무자가 20○○. ○. ○. 제3채무자에게 공급한 건설기자재대금)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전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,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 및



전부할 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고, 나아가 채권 자의 위 청구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는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1통1. 송달증명원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시집행법 제223조, 제229조제1항
제출부수	- 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
불복절차	불복절차 ・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, 제229조제6항)		
및 기간	・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
비 용	·인지액: 4,000원 (압류 2,000원 + 전부 2,000원)		
비 용	·송달료 : 당사자수(채권	자, 채무자, 제3채-	무자)×○○○원(우편료)×2회분
기 타	·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,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.		



- ·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, (1)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채권의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,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, (2)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 64810 판결).
- ·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,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 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1, 7, 10, 선고 2000다72589 판결).

참고판례요지

- ·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7527 판결).
- ·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,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,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,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7910 판결).
- ·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,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 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(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1699 판결).



- ·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,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,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(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)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(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99 다68652 판결).
- 참고판례요지
- ·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 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 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 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 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 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 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, 그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 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 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.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 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 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 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 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 은 아님(대법원 2002, 7, 26, 선고 2001다68839 판결).
- ※ 제출법원(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)
 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 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 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



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
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